2024 핵심 개정세법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2024 핵심 개정세법] 발간에 부쳐

자랑스런 세무사 회원님,
그리고 세무사와 함께 하는 국민과 기업 납세자 여러분!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이바지하는 법적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사명은 단순한 구호나 목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현장에서 고객과 국민을 위해 매일매일 구현하는 직무 그 자체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따뜻한 가슴과 최신의 정보 및 콘텐츠로 무장한 세무사에게 개정세법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도 국회의 세법개정을 맞아 가장 먼저, 가장 알차게 '2024 핵심 개정세법' 도서를 발간했습니다. '2024 핵심 개정세법'을 실무에서 활용할 때는 실제 법조문과 함께 향후 나오게 되는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까지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만7천 세무사공동체인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위있는 조세입법 정보를 가장 먼저, 가장 유용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법해설서, 핵심실무, 테마별 실무서 등 권위있는 전문서적은 물론 조세정보와 조세브리핑 등 정책자료 등 한국세무사회 도서혁신 라인업과 함께 국민의 사랑받는 최고의 조세전문가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한국세무사회 회장 구 재 이

CONTENTS

2025 달라지는 세금제도 (국민·기업 납세자용)

01 부동산 세금제도 ····· 3
02 자본금융 세금제도 ····· 6
03 봉급 생활자 세금제도 ····· 8
04 국민생활 세금제도 ····· 9
05 기업경영 세금제도 ····· 13
06 기업세금 감면제도 ····· 21
▶ 참고 : 2023년 개정사항 중 2025년도부터 시행 ····· 25

2024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세무사·전문가용)

01 국세기본법 ····· 29
02 소득세법 ····· 32
03 법인세법 ····· 37
04 부가가치세법 ····· 39
05 조세특례제한법 ····· 40
0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50
▶ 참고 : 2023년 개정사항 중 2025년도부터 시행 ····· 52

CONTENTS

2024 개정세법 종전 – 개정사항 비교 (상세본)

01 • 국세기본법

01 /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
(국기법 §10, 국기령 §6의2) ····· 57

02 /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국기법 §24②) ····· 58

03 /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국기법 §26의2③) ····· 58

04 /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
(국기법 §39) ····· 59

05 /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
(국기법§45의2) ····· 59

06 /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국기법 §45의2①) ····· 60

07 /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
(국기법 §51⑧) ····· 61

08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국기법 §81의7①) ····· 61

09 /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
(국기법 §81의15) ····· 62

CONTENTS

02 • 소득세법

01 /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
(소득법 §4②, 법인법 §5②) ····· 63

02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소득법 §12(3)) ····· 64

03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소득법 §12(3), §20①) ····· 64

04 /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소득법 §17①) ····· 65

05 /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
(소득법 §17②, 소득령 §27) ····· 66

06 /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소득법 §17③, 소득령 §26의3) ····· 66

07 /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소득법 §50①(3)) ····· 67

08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소득법 §59의2①) ····· 68

09 /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소득법 §61②) ····· 68

10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소득법 §97의2) ····· 69

11 /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소득법 §100③, 소득령 §166⑦) ····· 70

12 /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소득법 §119의3, 소득령 §179의4, 법인법 §93의3, 법인령 §132의4) ···· 71

CONTENTS

13 / 경정청구 절차 신설(소득법 §119의3⑥·⑦, 법인법 §93의3⑥·⑦, 소득령 §179의4⑦·⑧, 법인령 §132의4⑦·⑧ 신설) ····· 72

14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소득법 §129①) ····· 72

15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소득법 §150③·§169, 소득령 §221①) ····· 73

16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소득법 §156의2, 소득령 §216의2, 법인법 §98의4, 법인령 §162의2) ····· 74

17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소득법 §160의3④, 법인법 §112의2④) ····· 75

18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득법 제2장의2, 조특법 §14 등) ····· 75

19 /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종료 (소득법 §59의4⑧) ····· 76

20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 76

21 /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소득법 §37⑥, 소득령 §88) ····· 77

22 /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 (소득법 §164의4, 법인법 §120의4) ····· 77

23 /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소득법 §164의4·§177, 법인법 §120의4·§124, 소득령 별표5, 법인령 별표2) ····· 78

CONTENTS

03 • 법인세법

01 / 의료기술협력단을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
(법인법 §24②, 법인령 §39①) ····· 79

02 /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법인법 §46②, 법인령 §82의2⑦) ····· 80

03 /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
(법인법 §51의2④·⑤, 조특법 §104의31③·④) ····· 81

04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법인법 §55①) ····· 82

05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법인법 §63의2①·②, §76의18①·②) ····· 83

06 /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
(법인법 §76의22) ····· 84

07 /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
(법인법 §76의22) ····· 84

04 • 부가가치세법

01 /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법 §26①) ····· 85

02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47①·63④, 소득법 §56의3①) ····· 85

03/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부가법 §57의2 신설) ····· 86

04 /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
(부가법 §60①, §68의2①) ····· 86

05 • 조세특례제한법

01 /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
(조특법 §2①(11), 조특령 §1의2) ····· 87

02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조특법 §6) ····· 88

03 / 업종명칭 현행화
(조특법 §6③, §7①, §106⑤) ····· 89

04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조특법 §10①) ····· 90

05 /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
(조특법 §10의2①) ····· 91

06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조특법 §12의4①, 조특령 §11의4④) ····· 92

07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6의2①, §16의3①, §16의4①) ····· 93

08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9) ····· 94

09 /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증가분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4①) ····· 95

10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
(조특법 §24①, §146) ····· 69

CONTENTS

11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조특법 §29의6①) ····· 97

12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46의7①) ····· 98

13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47, 조특령 §43의9 신설) ····· 98

14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조특법 §58①) ····· 99

15 /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
(조특법 §63, 조특령 §60) ····· 100

16 /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의 감면요건 정비
(조특법 §63, §63의2, 조특령 §60, §60의2) ····· 101

17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71의2, 조특령 §68의2 신설) ····· 102

18 /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조특법 §74①) ····· 103

19 /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
(조특법 §77의2②, 조특령 §73②) ····· 104

20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 §86의3①) ····· 105

21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87) ····· 106

22 / 세금우대저축자료 제공요구 주체 확대
(조특법 §89의2⑥) ····· 107

23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1의20①) ····· 108

24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조특법 §91의22③) ····· 108

25 /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1의23①) ····· 109

26 / 결혼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92 신설) ····· 109

27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6의3①) ····· 110

28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7의3①) ····· 110

29 /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7의9①, 법인령 §92의2④) ····· 111

30 /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의9, 조특령 §98의8 신설) ····· 112

31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의10) ····· 113

32 /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9의14 신설) ····· 114

33 /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조특법 §100의3①(2), §100의5①(3)) ····· 115

34 /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
(조특법 §100의3⑤(2)) ····· 116

CONTENTS

35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유보 요건 정비
(조특법 §100의5②, §100의8⑤) ····· 116

36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104의10①·⑧, 조특령 §104의7④) ····· 117

37 /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11) ····· 118

38 /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24①, §118의2①) ····· 118

39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26) ····· 119

40 /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
(조특법 §104의34 신설, 조특령 §104의31 신설) ····· 120

41 /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
(조특법 §106의7⑦, 조특령 §106의12) ····· 121

42 /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조특법 §106의11 신설, 108의3, 조특령 §106의15 신설) ····· 122

43 /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조특법 §107의2, 조특령 §109의2) ····· 122

44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109) ····· 123

45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조특법 §122의3⑤) ····· 124

46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조특법 §126의2②) ····· 125

47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종료
(조특법 §12의3) ····· 126

48 /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종료
(조특법 §28의4) ····· 126

49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종료
(조특법 §91의15) ····· 127

50 /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종료
(조특법 §106②·§116①) ····· 127

06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01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
(국조법 §6) ····· 129

02 /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
(국조법 §36·§37·§38) ····· 130

03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
(국조법 §54) ····· 131

04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완 요구 기한 조정
(국조법 §58) ····· 132

05 / 그룹 및 구성기업 정의 명확화
(국조법 §61①(2)·(9)) ····· 132

06 /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
(국조법 §61①(3)) ····· 133

07 /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명칭 및 정의 명확화
(국조법 §61①(8)) ····· 134

CONTENTS

08 / 연결매출액 산출방법 위임근거 마련
(국조법 §62⑤) ····· 134

09 /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미납 이연법인세부채 차감금액 계산방법
위임근거 마련(국조법 §67③) ····· 135

10 / 조정대상조세 계산 관련 결손취급 특례 신설
(국조법 §67④·⑤ 신설) ····· 136

11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법 보완
(국조법 §73⑤) ····· 137

12 / 최소적용제외 특례의 예외 신설
(국조법 §74②) ····· 138

13 / 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대상기업 확대 등
(국조법 §77의2) ····· 139

14 / 투시과세기업 지분소유자 기준 위임근거 마련
(국조법 §79①) ····· 140

15 /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중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의 범위
명확화(국조법 §79⑥) ····· 140

16 / 전환기 적용면제의 공동기업 등에 대한 적용방법 보완
(국조법 §80② 신설) ····· 141

17 / 일반적 적용면제 등 추가신설
(국조법 §80③·④ 신설) ····· 142

18 / 신고기한 특례 신설
(국조법 §83①·④, §84①) ····· 142

CONTENTS

07 • 기타 법률

01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개소법 §20의2, 개소령 §34의2) ····· 143

02 /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주세법 §8③, 주세령 §7) ····· 143

03 /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교통세법 §11①·②) ····· 144

04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
(교통세법 부칙) ····· 145

05 / 금융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대
(과제법 §6④) ····· 145

01

2025 달라지는 세금제도
(국민·기업 납세자용)

2025 달라지는 세금제도

01 부동산 세금제도

(소득법)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 2023년 개정사항

ㅇ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① + ②)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① 보유기간 공제율(최대 40%):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② 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법)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ㅇ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추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소득법)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ㅇ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인정할만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분계산에서 제외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

  ㅇ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출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및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ㅇ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2024.1.4. ~ 2026.12.31.)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

  ㅇ 1주택자가 '24.1.10. ~ '25.12.31.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ㅇ ▲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 연금계좌 납입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 시 세액공제액을 추징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2 자본금융 세금제도

(소득법 등)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ㅇ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하였다.

(소득법 등) 가상자산 과세 유예

ㅇ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4.7.19. ~) 시행 상황 등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였다.

(소득법)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ㅇ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을 허용한다.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법, 법인법)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ㅇ 제출의무 대상 범위를 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 중 신고 직권말소·유효기간 경과 사업자를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국세청장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최대 2,000만원)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다.
〈적용시기〉 (소득세법) '27.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25.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소득법, 법인법)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방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

*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발행하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

ㅇ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이익은 내용별 소득 구분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고,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은 수탁자의 법인세 납부 의무에서 제외한다.

〈적용시기〉 (소득구분)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법 인 세)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법, 법인법)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추가

ㅇ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적용시기〉 '25.7.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03 봉급 생활자 세금제도

(소득법)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

ㅇ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한다.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24년은 '21.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

(소득법)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근거 마련

* 자동차·전자제품 등 재화를 생산하거나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일반소비자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ㅇ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얻는 이익을 ▲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비과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조특법)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ㅇ 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7.12.31.까지 3년 연장하고, 가입기간 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감면 대상 범위의 위임근거를 마련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04 국민생활 세금제도

(소득법)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ㅇ 직계비속의 나이 요건을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다.

(소득법)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ㅇ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자녀·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소득법)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ㅇ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 초과 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볼 때 세액공제액에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ㅇ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이에 맞추어 세액공제 적용 기부금 한도금액도 동일하게 확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ㅇ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로 확대하였다.

〈적용시기〉 (소득공제)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비 과 세) '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 **(조특법)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 상향**

※ 2023 개정사항

ㅇ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강화를 위하여 비과세 납입한도를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5만원 상향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조특법)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ㅇ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종전 5년) 이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금액에서 제외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결혼세액공제 신설**

ㅇ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근로장려금(EITC) 지원 강화**

ㅇ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하였다.

ㅇ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질병 치료·요양 목적으로 일시퇴거 시 거주요건을 적용 배제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ㅇ 하반기 지급금액을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금액(35%)을 차감한 금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려금 지급유보 요건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 조정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ㅇ 서민·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25.7.1. 이후 지출분)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분을 소득공제(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 공제율 30%, 추가공제 한도 300만원에 포함)에 적용하도록 확대하였다.

〈적용시기〉 '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국기법)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

ㅇ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3회 연속 미열람 시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뿐만 아니라 독촉장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는 철회 기준에서 제외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부터 적용

(국기법)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ㅇ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ㅇ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국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국기법)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

ㅇ 국세환급금을 1년간 미수령 시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하는 금액의 기준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

05 기업경영 세금제도

(법인법, 조특법)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

ㅇ (특례, 일반)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하고,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특례 규정을 적용가능 하도록 하였다.

〈적용시기〉 (특례기부금)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기부금)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손금산입 특례)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법)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ㅇ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요건을 합리화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법, 조특법)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

ㅇ 이월공제대상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배당금액(당기분 + 전기 미공제 이월분)합계액으로 명확화하였다.

(법인법)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ㅇ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의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법인법)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ㅇ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법인법)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

ㅇ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법)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

ㅇ 연결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최초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법, 법인법) 국외투자기구의 국채등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ㅇ 국외투자기구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법, 법인법) 경정청구 절차 신설

ㅇ 외국인 투자자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법)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

ㅇ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2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법)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ㅇ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 근로자에 대한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7.12.31.까지 3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5%에서 3%로 축소하였고, ▲ 사업자에 대한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교부금을 폐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소득법, 법인법)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화

ㅇ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 신청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법, 법인법)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ㅇ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받은 분부터 적용

- **(소득법, 부가법)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4.12.31. → '27.12.31.

- **(부가법)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법)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법)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
  - 명의위장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서 2%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에서 1%로 상향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업종명칭 현행화**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을 반영하여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을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으로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을 도로화물운송업(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으로 변경하였다.

(조특법)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ㅇ 벤처기업 창업주가 신주(복수의결권) 납입대금으로 구주(1의결권, 보통주)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신주의 보통주 전환시까지 과세이연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 신설

ㅇ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하던 건설기계(1대로 한정)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상당액은 ▲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5년 이내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ㅇ **(사후관리)** 총수입금액 전액 산입 전 폐업 등의 경우 미산입금액 전액 총수입금액 산입 후 해당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간이과세자인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

※ 2023 개정사항

ㅇ 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하고, ▲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간이과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해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

  ㅇ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으로 경감세액 미지급 시 가산세 추징을 배제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 **(국기법)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ㅇ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세액공제액부터 적용

- **(국기법)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

  ㅇ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국기법)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ㅇ 납세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경정청구에 관한 경과규정)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액의 경우 '25.12.31.까지 경정청구 허용

- **(국기법)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ㅇ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하려

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조정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국기법)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

ㅇ 납부고지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한 경우 과세예고통지 배제 사유로 추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국조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

ㅇ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 기준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거소 기준에 맞추어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등을 추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국조법)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완 요구 기한 삭제

ㅇ 과세당국이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 명세 등의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제한을 삭제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보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 이전에 제출·보완 요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적용

(소득령)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 2023 개정사항

ㅇ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125 → 138개 업종)하고, 1개 업종(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을 정정하였다.

○ 추가 13개 업종
①여행사업, ②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수영장운영업, ④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실외경기장 운영업, ⑥실내경기장 운영업, ⑦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볼링장 운영업, ⑨스키장운영업, ⑩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앰뷸런스 서비스업, ⑬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적용시기〉 '25.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6 기업세금 감면제도

(조특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ㅇ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27.12.31.까지 3년 연장하고, 고용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였다. 다만, 특정 기업에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감면 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였다.

ㅇ 지방에 비해 창업 여건이 양호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50% 인하(일반 50%, 청년·생계형 100%→일반 25%, 청년·생계형 75%)하고, 업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초기 3년+25%p)의 적용기한을 종료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6.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ㅇ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 상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15%에서 20%로 상향하였다.

〈적용시기〉 (점감구조 도입)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조특법)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으로 확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ㅇ 세액공제를 피인수법인 기술가치금액의 10%에서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낮추고, 취득기간을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최대 2년간 분할취득 가능)에서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최대 3년간 분할취득 가능)로 확대하였다.

  〈적용시기〉 (취득기간)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공 제 율) '25.1.1. 이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ㅇ 법인세 공제·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7.12.31.까지 3년 연장하되, 기업·근로자 모두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ㅇ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에서 9%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에서 20%로, 일반 투자는 5%에서 7.5%로 상향하고, ▲ 추가공제율은 일괄적으로 10%로 상향하였다.

  ㅇ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 사업화시설에 투자하여 기업 규모별 차등 공제율을 적용하는 기한을 3년 연장한 '27.12.31.까지 적용한다.

  ㅇ 임대사업자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적용시기〉 (점감구조 도입)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추가공제율)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자산 배제) '25.1.1. 이후 처분·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 정비

ㅇ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한다.

ㅇ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 감면 대상에서 공장시설 및 본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 중단 및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하고, ▲ 업종의 경우 공장·본사 이전 전 2년(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여야 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까지 기존 공장·본사를 철거·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조특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ㅇ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ㅇ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추징요건인 과소신고 기준을 ▲ 수입·경비에서 소득금액으로 변경하고, ▲ 범위를

사업소득금액 성실사업자 20%,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0%이상 과소신고 금액으로 조정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 2023년 개정사항 중 2025년도부터 시행

○ **(소득법 §95)**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 보유기간 공제율(건물 + 1세대 1주택) +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1주택)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91의19)**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 한도 월 40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조특법 §105의3)**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환급 제도*로 전환

* 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

*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간이과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령 별표)**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125 → 138개 업종)하고, 1개 업종**을 정정

* ①여행사업, ②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수영장운영업, ④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실외경기장 운영업, ⑥실내경기장 운영업, ⑦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볼링장운영업, ⑨스키장운영업, ⑩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앰뷸런스 서비스업, ⑬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적용시기〉 '25.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국조법 §58, §59, §91)**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자에 신탁정보 및 신탁재산가액 등 자료 제출의무 부여*

* 해외 신탁 설정 또는 해외 신탁에 재산 이전 시(1회),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 시(매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26.1.1. 이후 자료 제출)

○ **(국조법 §72, §73)**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의 과세

-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인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 우선 적용
-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은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해당 모기업에 귀속되는 비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이익에 대한 모기업의 지분에 비례하여 모기업이 추가세액을 부담
- 최종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추가세액배분액이 해당 최종모기업에 우선 과세되고, 최종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등 최종모기업에 추가세액배분액을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모기업이 부담하되,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경우 그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
-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한 추가세액배분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

○ **(국조법 §82)** 해외진출 초기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의 기산점* 보완

*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최초로 적용되는 시기('25.1.1.)로부터 특례적용 기간 5년 기산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2

2024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세무사·전문가용)

2024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1 국세기본법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국기법 §10, 국기령 §6의2)

ㅇ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3회 연속 미열람 시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다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뿐만 아니라 독촉장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는 철회 제외

〈적용시기〉 '25.1.1. 이후부터 적용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국기법 §24②)

ㅇ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간주

ㅇ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국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간주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26의2③)**

  ㅇ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규정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세액공제액부터 적용

-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국기법 §39)**

  ㅇ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

  〈적용시기〉 '25.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국기법 §45의2)**

  ㅇ (과세관청의 증액결정·경정처분) 90일 이내 → 3개월 이내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기법 §45의2①)**

  ㅇ 납세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경정청구에 관한 경과규정)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액의 경우 '25.12.31.까지 경정청구 허용

-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국기법 §51⑧)**

  ㅇ 국세환급금을 1년간 미수령 시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하는 금액의 기준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적용시기〉 '25.1.1. 이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국기법 §81의7①)

ㅇ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조정

〈적용시기〉 '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국기법 §81의15)

ㅇ (납부고지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지만 과세예고통지 배제 사유 추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한 경우

〈적용시기〉 '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02 소득세법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이익 내용별 소득구분 원칙의 예외 적용 (소득법 §4②)

*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발행하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

ㅇ (원칙)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

ㅇ (예외) 별도로 소득 구분: ❶ 수탁자 법인세 납부 신탁, ❷ 투자신탁('24.12.31.까지 적격집합투자기구로 한정), 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❹ 〈추가〉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

〈적용시기〉 (소득구분)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소득법 §12(3))

ㅇ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24년은 '21.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근거 마련(소득법 §12(3), §20①)

* 자동차·전자제품 등 재화를 생산하거나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일반소비자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ㅇ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비과세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추가(소득법 §17①, 법인법 §5②)**

  ㅇ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

  〈적용시기〉 '25.7.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법 §17②)**

  ㅇ (합병대가 명확화) 존속·합병신설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

-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소득법 §17③)**

  ㅇ (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 추가) 유상 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소득법 §50①(3))**

  ㅇ 직계비속의 나이 요건을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도록 조문 정비

-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56의3①)**

  ㅇ (적용기한) '24.12.31. → '27.12.31.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59의2①)**

  ㅇ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자녀·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

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소득법 §61②)**

  ㅇ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 초과 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볼 때 세액공제액에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포함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97의2)**

  ㅇ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 추가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소득법 §100③)**

  ㅇ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인정할만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분계산 제외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국외투자기구의 국채등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소득법 §119의3, 법인법 §93의3)**

  ㅇ 국외투자기구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적용시기〉 '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경정청구 절차 신설(소득법 §119의3⑥·⑦, 법인법 §93의3⑥·⑦)**

  ㅇ 외국인 투자자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근거 마련

  * (경정청구) 원천징수의무자 외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직접 경정청구 가능
    - (청구자) 비거주자·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 또는 소득지급자
    - (청구기한)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소득법 §129①)**

  ㅇ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20% 원천징수세율 적용

  〈적용시기〉 '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소득법 §150③)**

  ㅇ (근로자)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7.12.31.까지 3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5%에서 3%로 축소

  ㅇ (사업자)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및 교부금 폐지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화 (소득법 §156의2, 법인법 §98의4)**

  ㅇ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법 §160의3④, 법인법 §112의2④)**

  ㅇ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받은 분부터 적용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제2장의2, 조특법 §14 등)**

  ㅇ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종료(소득법 §59의4⑧)**

  ㅇ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적용기한 종료

-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ㅇ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4.7.19.~) 시행 상황 등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

-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소득법 §37⑥)**

  ㅇ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 허용

  * 단,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하고,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 불인정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소득법 §164의4, §177, 법인법 §120의4, §124)**

  ㅇ (제출의무 대상 범위 보완) 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 중 신고 직권말소·유효기간 경과 사업자 포함

  ㅇ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국세청장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최대 2,000만원) 부과 근거 마련

  〈적용시기〉 (소득세법) '27.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25.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03 법인세법

-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 신탁은 수탁자 법인세 납부 의무 제외(법인법 §5②)**

*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발행하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

ㅇ (수탁자 법인세 납부 의무인 신탁 제외)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및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

〈적용시기〉 (법인세)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의료기술협력단을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법인법 §24②)**

ㅇ (특례, 일반)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

〈적용시기〉 (특례기부금)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기부금)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법인법 §46②)**

ㅇ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법인법 §51의2④·⑤, 조특법 §104의31③·④)**

ㅇ 이월공제대상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배당금액(당기분 + 전기 미공제 이월분)합계액으로 명확화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법인법 §55①)**

  ㅇ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의 세율을 적용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법인법 §63의2①·②, §76의18①·②)**

  ㅇ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법인법 §76의22)**

  ㅇ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 적용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

-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법인법 §76의22)**

  ㅇ 연결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최초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적용시기〉 '25.1.1. 이후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04 부가가치세법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26①)

ㅇ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7①, §63④)

ㅇ (적용기한) '24.12.31. → '27.12.31.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부가법 §57의2)

ㅇ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부가법 §60①, §68의2①)

ㅇ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서 2%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에서 1%로 상향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5 조세특례제한법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조특법 §2①(11))

- (조특법상 연구개발의 개념·범위)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창의적인 활동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 §6)

- 적용기한을 '27.12.31.까지 3년 연장하고, 고용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인상, 연간 감면 한도 5억원 설정
-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 인하

〈종전〉

구 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중소기업	-	5년 50% (신성장서비스 우대)	상시 근로자 증가율 × 50%
청년·생계형	5년 50%	5년 100%	
벤처기업 등	5년 50%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

〈개정〉

구 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창업 중소기업	-	**5년 25%**	5년 50%	상시 근로자 증가율 × 100%
청년·생계형	5년 50%	**5년 75%**	5년 100%	
벤처기업 등	5년 50%			

- 업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초기 3년 + 25%p) 적용기한 종료

  〈적용시기〉 '25.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6.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업종명칭 현행화(조특법 §6③, §7①, §106⑤)

ㅇ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하여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을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으로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을 도로화물운송업(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으로 변경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10①)

ㅇ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 상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15%에서 20%로 상향

〈종전〉

구분(%)	기본			추가[1]
	대	중견	중소	
일반	2	8~15[2]	25	
신성장·원천	20	20	30	최대 10
국가전략	30		40	최대 10

1)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매출액×3)
2) (~3년) 15%, (4~5년) 10%, (6년~) 8%

➔

〈개정〉

구분(%)	기본			추가[1]
	대	중견	중소	
일반	2	8~20[2]	25	
신성장·원천	20	20, 25[3]	30	최대 10
국가전략	30	30, 35[4]	40	최대 10

1)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매출액×3)
2) (~3년) 20%, (4~5년) 15%, (6년~) 8%
3) (~3년) 25%, (4년~) 20%
4) (~3년) 35%, (4년~) 30%

〈적용시기〉 (점감구조 도입)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조특법 §10의2①)

ㅇ (대상 출연금 확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조특법 §12의4①)**

  ㅇ 세액공제를 피인수법인 기술가치금액의 10%에서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낮추고, 취득기간을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최대 2년간 분할취득 가능)에서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최대 3년간 분할취득 가능)로 확대

  〈적용시기〉 (취득기간)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공 제 율) '25.1.1. 이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9)**

  ㅇ 법인세 공제·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7.12.31.까지 3년 연장하되, 기업·근로자 모두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인하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증가분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4①)**

  ㅇ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에서 9%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에서 20%로, 일반 투자는 5%에서 7.5%로 상향

  ㅇ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은 3년 연장한 '27.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

〈종전〉

구분(%)	기본			추가[1]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10	3
신성장·원천	3	6	12	
국가전략	15		25	4

1)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개정〉

구분(%)	기본			추가[1]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7.5[2]	10	10
신성장·원천	3	6, 9[3]	12	
국가전략	15	15, 20[4]	25	

1)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2) (~3년) 7.5%, (4년~) 5%
3) (~3년) 9%, (4년~) 6%
4) (~3년) 20%, (4년~) 15%

〈적용시기〉 (점감구조 도입)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추가공제율)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조특법 §24①, §146)**

  ㅇ 임대사업자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배제

  〈적용시기〉 '25.1.1. 이후 처분·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조특법 §29의 6①)**

  ㅇ 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7.12.31.까지 3년 연장하고, 가입기간 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감면 대상 범위의 위임근거 마련

  〈적용시기〉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47)**

  *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ㅇ 벤처기업 창업주*가 신주(복수의결권) 납입대금으로 구주(1의결권, 보통주)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신주의 보통주 전환**시까지 과세이연

* (요건) 벤처기업의 발기인 & 상무 등기이사 & 30% 이상 의결권 보유 최대주주 등

**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벤처기업의 상장 등

〈적용시기〉 '25.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58①)

ㅇ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도 상향(연 500만원 → 2,000만원)에 맞추어 세액공제 적용 기부금 한도금액 확대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조특법 §63)

ㅇ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

〈적용시기〉 '2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까지 기존 공장·본사를 철거·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의 감면요건 정비(조특법 §63, §63의2)

ㅇ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공장시설 및 본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 중단 및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

ㅇ 업종의 경우 공장·본사 이전 전 2년(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적용시기〉 '2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까지 기존 공장·본사를 철거·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71의2 신설)**

  ㅇ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2024.1.4. ~ 2026.12.31.)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ㅇ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조특법 §77의2②)**

  ㅇ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출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 → 통보하여야 함)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86의3①)**

  ㅇ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87)**

  ㅇ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시기〉 (소득공제)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 **세금우대저축자료 제공요구 주체 확대(조특법 §89의2⑥)**

  ㅇ (자료요구 주체 추가)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연금계좌 자료를 「통계법」제25조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적용시기〉 '25.1.1. 이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조특법 §91의22③)**

  ㅇ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종전 5년) 이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 제외

  〈적용시기〉 '25.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2 신설)**

  ㅇ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의9 신설)**

  ㅇ 1주택자가 '24.1.10. ~ '25.12.31.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9의14 신설)**

  ㅇ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

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 시 세액공제액 추징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EITC) 지원 강화(조특법 §100의3, §100의5, §100의8)

-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
-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질병 치료·요양 목적 일시퇴거 시 거주요건을 적용 배제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
- 하반기 지급금액을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금액(35%)을 차감한 금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려금 지급유보 요건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 조정

〈적용시기〉 '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04의34)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하던 건설기계(1대로 한정)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상당액은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총수입금액에 산입. 다만, 5년 이내 중복 적용 불가
- (**사후관리**) 총수입금액 전액 산입 전 폐업 등의 경우 미산입금액 전액 총수입금액 산입 후 해당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 추가 납부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조특법 §106의7⑦)**

  ㅇ (가산세 추징 배제규정 신설)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으로 경감세액 미지급 시 가산세 추징 배제

  〈적용시기〉 '25.1.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조특법 §106의11, §108의3)**

  ㅇ 투명한 세금 징수를 위하여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

  〈적용시기〉 '25.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09)**

  ㅇ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6.12.31.까지 2년 연장하고, 친환경차 보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

  〈적용시기〉 '25.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122의3⑤)**

  ㅇ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추징 요건인 과소신고 기준을 수입·경비에서 소득금액으로 변경하고 범위를 사업소득금액 성실사업자 20%,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0%이상 과소신고 금액으로 조정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126의2②)**

  ㅇ 서민·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25.7.1. 이후 지출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 공제율 30%, 추가공제한도(300만원)에 포함

  〈적용시기〉 '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감면 등 특례제도 적용기한 정리]

적용기한	내 용(조문)
종료	• 창업중소기업(신성장서비스업) 감면율 우대 종료(§6)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종료(§12의3) •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종료(§28의4) • 정규직 전환 추가공제 종료(§29의8)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종료(§91의15) •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종료(§106, §116)
연장 (2025.12.31.)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91의20)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96의3)
연장 (2026.12.31.)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109)
연장 (2027.12.31.)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6)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2의4)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6의2, §16의3, §16의4)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19)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4)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29의6)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46의7) •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91의23)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97의3) •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97의9) •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99의14) •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100의33) •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104의11) •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104의24, §118의2)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104의26)
연장 (2028.12.31.)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기한 연장(§99의10) •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100의34)
연장 (2029.12.31.)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104의10)

0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국조법 §6)

ㅇ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할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 요구 가능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국조법 §36)

ㅇ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에 '암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추가

〈적용시기〉 (교환정보 요청·제출) '27.1.1.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실사) '26.1.1. 이후 금융거래회사등이 실사하는 분부터 적용

※ (실사에 관한 경과규정) '26.1.1. 현재 금융거래등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국조법 §54)

ㅇ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 기준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거소 기준에 맞추어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등을 추가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완 요구 기한 삭제(국조법 §58)

ㅇ 과세당국이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 명세 등의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제한 삭제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보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 이전에 제출·보완 요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적용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국조법 §67④ 신설)

ㅇ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계산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를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세액 과세면제 특례 확대(국조법 §80②·③ 신설)

ㅇ '공동기업그룹' 및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환기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간주

* 전환기사업연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ㅇ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간주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 등에 대한 특례(국조법 §83①·④, §84①)

ㅇ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및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 2023년 개정사항 중 2025년도부터 시행

○ **(소득법 §95)**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 보유기간 공제율(건물 + 1세대 1주택) +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1주택)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91의19)**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 한도 월 40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조특법 §105의3)**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환급 제도*로 전환

* 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

*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간이과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령 별표)**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125 → 138개 업종)하고, 1개 업종**을 정정

* ①여행사업, ②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수영장운영업, ④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실외경기장 운영업, ⑥실내경기장 운영업, ⑦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볼링장운영업, ⑨스키장운영업, ⑩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앰뷸런스 서비스업, ⑬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적용시기〉 '25.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국조법 §58, §59, §91)**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자에 신탁정보 및 신탁재산가액 등 자료 제출의무 부여*

* 해외 신탁 설정 또는 해외 신탁에 재산 이전 시(1회),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 시(매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26.1.1. 이후 자료 제출)

○ **(국조법 §72, §73)**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의 과세

-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인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 우선 적용
-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은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해당 모기업에 귀속되는 비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이익에 대한 모기업의 지분에 비례하여 모기업이 추가세액을 부담
- 최종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추가세액배분액이 해당 최종모기업에 우선 과세되고, 최종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등 최종모기업에 추가세액배분액을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모기업이 부담하되,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경우 그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
-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한 추가세액배분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

MEMO

03

2024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 (상세본)

2024 개정세법 종전 - 개정사항 비교

01 국세기본법

01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
(국기법 §10, 국기령 §6의2)

종 전	개 정
□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 * 철회시 서류송달로 변경 ○ (원칙) 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 서류 미열람** ○ (예외) 전자송달된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 열람한 것으로 간주	□ 철회 간주 기준 합리화 ○ **2회 연속 → 3회 연속** ○ **고지서 납부기한 → 고지서 및 독촉장 납부기한**

〈개정이유〉 납부고지 절차 등 관련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부터 적용

02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국기법 §24②)

종 전	개 정
□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 **(대상) 상속인**(수유자 포함) ○ **(승계 범위) 상속재산** -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포함**	□ 납세의무 승계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❶, ❷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포함** ❶ 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 ❷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 체납 기간의 비율로 안분계산

〈개정이유〉 납세의무 승계 관련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03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국기법 §26의2③)

종 전	개 정
〈신 설〉	□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 ** 과소신고 5년, 무신고 7년 등 ○ **세액공제액**을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공제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년** * 세액공제액 이월시 해당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동 특례의 적용시점까지 보관할 필요

〈개정이유〉 부과제척기간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세액공제액부터 적용

04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
(국기법 §39)

종 전	개 정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❶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합명회사 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❷ **과점주주** - **(요건) 주주등**(대상)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①지분율 합계 50%를 초과하고, ②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 **(대상)** • 주주,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 **〈추 가〉**	□ 대상자 범위 확대 (좌 동) **• 영농·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개정이유〉 납세의무승계 관련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05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
(국기법 §45의2)

종 전	개 정
□ 경정청구 기간 ○ **(원칙)**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예외)**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과세관청의 증액결정·경정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경정청구 기간 합리화 (좌 동) - 90일 이내 → **3개월 이내**

〈개정이유〉 경정청구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06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국기법 §45의2①)

종 전	개 정
□ 경정청구제도 ○ (의의) **이미 신고·결정된 세액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정정을 요청**하는 제도 ○ (**청구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좌 동)
○ (**청구 대상**)	○ **청구 대상 확대**
❶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❷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좌 동)
〈추 가〉	❸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개정이유〉 경정청구 확대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경정청구에 관한 경과규정)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액의 경우 '25. 12.31.까지 경정청구 허용

07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
(국기법 §51⑧)

종 전	개 정
□ 미수령 환급금의 충당 ○ (**대상**) 체납국세, 강제징수비 등에 충당하고 남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가 **1년간 미수령**한 경우 ○ (**효과**)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 ○ (**요건**) **10만원 이하**	□ 금액요건 상향 (좌 동) ○ **20만원 이하**

〈개정이유〉 미수령환급금 처리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

08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국기법 §81의7①)

종 전	개 정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 납세자에게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 **〈신 설〉**	□ 사전통지 기간 조정 ○ (**원칙**) 납세자에게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 ○ (**예외**) **불복 청구등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7일 전** 통지

〈개정이유〉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09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
(국기법 §81의15)

종 전	개 정
□ 과세예고통지 대상	□ 대상 조정
❶ 국세청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 ❷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른 **과세** ❸ **납부고지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좌 동)
-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배제**	- **배제사유 추가**
•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으로서 납세자가 사전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 (좌 동)
〈추 가〉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하는 경우

〈개정이유〉 과세예고통지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02 소득세법

01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

(소득법 §4②, 법인법 §5②)

*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발행하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

종 전	개 정
□ 수탁자 법인세 납부 의무인 신탁	□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은 수탁자 법인세 납부 의무 제외
○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 - 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제외**	○ (좌 동) - 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 제외**
□ 신탁의 이익 소득 구분	□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이익은 내용별 소득구분 원칙의 예외 적용
○ **(원칙)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 ○ **(예외)** 별도로 소득 구분 ❶ **수탁자 법인세 납부 신탁** ❷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❸ **투자신탁**('24.12.31.까지 **적격집합투자기구**로 **한정**) 〈추 가〉	(좌 동) ❸ **적격집합투자기구** ❹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

〈개정이유〉 조각투자상품 소득분류에 맞춰 신탁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법 인 세)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구분)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02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소득법 §12(3))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신 설〉 ○ (한도) **월 20만원** ※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비과세(월20만원)는 현행 유지	□ 비과세 한도 폐지 ○ **❶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❷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❸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 * '24년 수당 지급 시에는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 (**제외**)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 ○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개정이유〉 출산·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03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소득법 §12(3), §20①)

종 전	개 정
〈신 설〉	□ 종업원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종업원등**)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 ○ (**대상금액**) 종업원등이 자사·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 * 할인적용 전 판매가격 또는 쇼핑몰 등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 ○ (**적용요건**) **일반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

종 전	개 정
	□ 할인금액 중 비과세금액 ○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 **(비과세대상 요건)** ❶ **종업원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 ❷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 *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❸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

〈개정이유〉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04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소득법 §17①)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의 범위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 범위에 추가
○ 법인 배당·분배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	○ (좌 동)
〈추 가〉	○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명확화

〈적용시기〉 '25.7.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05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
(소득법 §17②, 소득령 §27)

종 전	개 정
□ 합병시 의제배당(❶ - ❷) ❶ 합병으로 소멸한 주주가 존속·합병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합병대가**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출자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 ❷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 합병대가 명확화 ○ (좌 동)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출자 가액**과 **금전** 및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 (좌 동)
□ 자본감소 또는 주식소각 시 의제배당(❶ - ❷) ❶ 주식소각·자본감소로 취득하는 금전·재산의 가액 ❷ 그 주식의 **취득가액** 〈단서 추가〉	□ 의제배당 취득가액 명확화 (좌 동)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행사 당시 시가**

〈개정이유〉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

06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소득법 §17③, 소득령 §26의3)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의 범위** ○ 의제배당 -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 등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분배금 등 〈추 가〉	□ **배당소득 범위 확대** (좌 동) ○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가산(Gross-up) 적용 제외되는 배당**	□ **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 추가**
ㅇ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분배금 등	ㅇ (좌 동)
〈추 가〉	ㅇ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
〈추 가〉	ㅇ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개정이유〉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07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소득법 §50①(3))

종 전	개 정
□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 나이요건 명확화
ㅇ **(대상요건)** 거주자의 직계비속 ㅇ **(나이요건) 20세 이하**	ㅇ (좌 동) ㅇ **20세 이하**(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개정이유〉 조문 정비

08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소득법 §59의2①)

종 전	개 정
□ 자녀세액공제 ○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공제금액)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후) 30만원/인	□ 공제금액 확대 (좌 동) - 25만원 - 30만원 - 40만원/인

〈개정이유〉 출산·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09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소득법 §61②)

종 전	개 정
□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 세액공제 적용방법 보완
○ 다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 (좌 동) (좌 동)
〈추 가〉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개정이유〉 세액공제 적용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소득법 §97의2)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 적용대상 자산 추가
○ 양도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 등	○ (좌 동)
〈추 가〉 | ○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 |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1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소득법 §100③, 소득령 §166⑦)

종 전	개 정
□ 토지·건물의 일괄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가액을 안분계산 ○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시 토지·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단서 신설〉**	□ 안분계산 예외 신설 (좌 동) - 다만,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안분계산 제외** * ❶ 다른 법령에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❷ 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 후 건물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개정이유〉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소득법 §119의3, 소득령 §179의4, 법인법 §93의3, 법인령 §132의4)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ㅇ (**대상**)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ㅇ (**투자방법**) **직접투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 통한 **간접투자**	(좌 동)
ㅇ (**국외투자기구**)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시 비과세 신청방법	ㅇ **사모국외투자기구**도 **공모국외투자기구**와 동일한 **절차 적용**
❶ **사모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하위투자자별**(실질귀속자별) 비과세 신청 ※ 투자자별 거주자증명서 취합·제출 ❷ (ⅰ) **공모국외투자기구** 또는 (ⅱ) **하위투자자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모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서만 제출	- **사모·공모**국외투자기구(❶&❷ 모두)를 통해 투자시: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 ※ 투자자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서만 제출
ㅇ (**원천징수 특례**) **국외투자기구**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 포함시 소득지급자 **원천징수** - **공모**국외투자기구: **면제** - **사모**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 ※ 어느 경우든 거주자·내국법인은 직접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사모·공모**국외투자기구 **모두 원천징수 면제** ※ 거주자·내국법인은 현행과 같이 직접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개정이유〉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경정청구 절차 신설

(소득법 §119의3⑥·⑦, 법인법 §93의3⑥·⑦, 소득령 §179의4⑦·⑧, 법인령 §132의4⑦·⑧ 신설)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 설〉 ※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직접 경정청구 불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만 가능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근거 마련** ○ (**경정청구**) 원천징수의무자 외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직접 경정청구 가능 - (**청구자**) 비거주자·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 또는 소득지급자 - (**청구기한**)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 - (**필요서류**) 경정청구서, 비과세 신청서, 거주자증명서 등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자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14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소득법 §129①)

종 전	개 정
□ 거주자의 원천징수(예납적) 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 ○ 지급액의 3% - 다만,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인 직업운동가: 20%**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확대** ○ (좌 동) - **외국인 직업운동가: 20%** *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적용

〈개정이유〉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소득법 §150③·§169, 소득령 §221①)

종 전	개 정
□ 납세조합* 원천징수 제도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세액공제·교부금 합리화
○ **(징수·납부) 납세조합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납부**(다음 달 10일까지) * (근로자) 국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복식부기 의무자 제외), 노점상인	(좌 동)
○ **(조합 교부금)**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2~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 (국세청 고시) 소득세액의 2%	○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 (소득세액의 2~10% → 1~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유지 **(사업자) 교부금 폐지**
○ **(조합원 세액공제) 매월 소득세액**의 5%*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 **(적용기한)** '24.12.31.	○ **근로자 공제율 축소: 소득세액의 5% → 3%**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유지 - **(근로자)** '27.12.31. **(사업자)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납세조합 세액공제·교부금 지원수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소득법 §156의2, 소득령 §216의2, 법인법 §98의4, 법인령 §162의2)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 의무 * ① 비과세·면제 신청서 및 ②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 제출	□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 의무화
○ **신청의무 면제 대상소득** - 국내원천 사업소득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좌 동) 〈삭 제〉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소득 지급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 **제출의무 면제 대상소득** -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부동산소득,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한 소득 등 - 국내원천 사업소득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국내원천소득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소득법 §160의3④, 법인법 §112의2④)

종 전	개 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 종이영수증 또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중 선택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대상)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발급기한)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

〈개정이유〉 기부자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기부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받은 분부터 적용

폐지 및 종료

18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득법 제2장의2, 조특법 §14 등)

종 전	개 정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 **(시행일)** '25.1.1.	□ 폐 지* *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

19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종료
(소득법 §59의4⑧)

종 전	개 정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적용기한 종료

구 분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3천만원 초과분 ('24.1.1.~'24.12.31.)	**40%**

구 분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개정이유〉 고액 기부에 대한 한시적 특례인 점 감안

가상자산 과세 관련 개정사항

20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종 전	개 정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소득구분)** 기타소득 ○ **(과세방법)**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0%, 분리과세 ○ **(신고·납부) 연 1회**(다음연도 5.1.~5.31.) ○ **(시행시기)** '25.1.1.	□ 시행시기 유예 (좌 동) ○ '27.1.1.

〈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 고려

21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소득법 §37⑥, 소득령 §88)

종 전	개 정
□ **가상자산소득의 필요경비** ○ **실제 취득가액 + 부대비용** 〈신 설〉	□ 필요경비 산정방식 보완 ○ (좌 동) -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취득가액 확인 곤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및 구체적 인정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2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
(소득법 §164의4, 법인법 §120의4)

종 전	개 정
□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 **(대상)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추 가〉 ○ **(제출자료)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집계표** ○ **(제출주기) 분기별·연도별** * 해당 분기·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제출의무 대상 범위 보완 ○ (좌 동) - **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 중 신고 직권 말소·유효기간 경과 사업자 포함** (좌 동)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기반 정비

〈적용시기〉 (소득세법) '27.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25.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23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

(소득법 §164의4·§177, 법인법 §120의4·§124, 소득령 별표5, 법인령 별표2)

종 전	개 정
〈신 설〉	□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자료 미제출시 제재 근거 마련 ○ **(제출명령) 과세자료 미제출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출명령** ○ **(과태료) 제출명령 미이행**시 **최대 2,000만원*** 부과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기반 정비

〈적용시기〉 (소득세법) '28.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03 법인세법

01 의료기술협력단을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

(법인법 §24②, 법인령 §39①)

종 전	개 정
□ 특례기부금 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립대학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추 가〉	□ 특례기부금 단체 추가 (좌 동) ○ **특례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 일반기부금 단체 ○ 사회복지법인 ○ 어린이집, 유치원 ○ 의료법인 〈추 가〉	□ 일반기부금 단체 추가 (좌 동) ○ **일반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개정이유〉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적용시기〉 (특례기부금)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기부금)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2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법인법 §46②, 법인령 §82의2⑦)

종 전	개 정
□ 적격분할 관련 지분의 연속성 요건	□ 자기주식 관련 지분의 연속성 요건 합리화
❶ (**교부**) 분할대가 전액(분할합병의 경우 80% 이상)을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으로 교부 ❷ (**배정**) 분할법인등의 주주(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법인등의 지배주주등)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지분비율)에 따라 배정	(좌 동)
〈추 가〉	- 지분비율 산정시 **분할법인등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제외**
❸ (**보유**) 분할법인등의 지배주주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 (좌 동)

〈개정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관련 적격분할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03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

(법인법 §51의2④·⑤, 조특법 §104의31③·④)

종 전	개 정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금액 소득공제 ○ (**대상**)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 ○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 (**공제방법**)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미공제액은 최대 5년간 이월공제 - (**이월공제대상**)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액**	□ 배당금액 소득공제시 이월공제 대상 명확화 (좌 동) -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배당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배당금액(당기분+전기 미공제 이월분) 합계액

〈개정이유〉 이월공제 대상 명확화

04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법인법 §55①)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table>
<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td>2억원 이하</td><td>9%</td></tr>
<tr><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19%</td></tr>
<tr><td>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td><td>21%</td></tr>
<tr><td>3,000억원 초과</td><td>24%</td></tr>
</table></td><td>□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 ❶ ~ ❸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❶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❷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table>
<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td>200억원 이하</td><td>19%</td></tr>
<tr><td>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td><td>21%</td></tr>
<tr><td>3,000억원 초과</td><td>24%</td></tr>
</table></td></tr>
</table>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05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법인법 §63의2①·②, §76의18①·②)

종 전	개 정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원칙) ❶, ❷ 중 선택 ❶ 직전 사업연도(연결법인의 경우 연결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 ❷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단서 신설〉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좌 동) -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 **에 속하는 내국법인·연결법인***은 **❷방식 적용** * 연결법인 중 어느 하나의 법인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개정이유〉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6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
(법인법 §76의22)

종 전	개 정
□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규정 적용방법	□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기준 신설
○ **(적용기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요건 충족여부 판별**	○ (좌 동)
○ **(적용방법)** -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 적용** 〈추 가〉	○ **(적용방법)** -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 적용** - **연결집단**이 **중견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견기업 규정 적용**

〈개정이유〉 연결납세방식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

07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
(법인법 §76의22)

종 전	개 정
□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 적용기간 확대
○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이후 3년간**	○ **이후 3년간 → 이후 5년간**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04 부가가치세법

01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법 §26①)

종 전	개 정
□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 ○ **혈액**	□ 면세 범위 확대 ○ (좌 동) ○ 혈액(**동물의 혈액*** **포함**) * 치료·예방·진단용에 한정

〈개정이유〉 동물 질병치료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2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47①·63④, 소득법 §56의3①)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세액공제 ○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전자계산서)에서 공제 ○ (**적용대상**) ❶ 또는 ❷ ❶ 직전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❷ 신규 사업자(개인) ○ (**공제금액**) 건당 200원 - 연간 1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4.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7.12.31.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 지원

03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부가법 §57의2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마련 ○ (**부과사유**)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❶ (가공)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발급·수취하는 경우 ❷ (위장) 공급자·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급·수취하는 경우 ❸ (과다기재)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을 기재하는 경우 - 그 밖에 사업장 현황, 영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부과기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개정이유〉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4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
(부가법 §60①, §68의2①)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 공급가액 × 가산세율	□ 명의위장등록 가산세 강화
○ 사업자 미등록: 1%* * 간이과세자: 0.5%	○ (좌 동)
○ 사업자 명의위장등록: **1%*** * 간이과세자: **0.5%**	○ **1% → 2%*** * 간이과세자: 0.5% → **1%**
○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수취 등: 3% ○ 세금계산서 위장발급·수취 등: 2%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1%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0.5%	(좌 동)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5 조세특례제한법

01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

(조특법 §2①(11), 조특령 §1의2)

종 전	개 정
□ 조특법상 연구개발 개념·범위	□ 개념·범위 명확화
○ (정의)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창의적인** 활동
○ 제외되는 활동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 법률 및 행정 업무 -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탐사 활동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 기존에 상품화·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좌 동)
〈추 가〉	- **상용화, 사업화된 제품·기술·서비스·설계·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변형·개선**하는 활동

〈개정이유〉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명확화

0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조특법 §6)

종 전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대상업종) 제조업** 등 20개

○ **(감면율) 업종·지역별 차등**

- **신성장서비스업 우대**('24년까지): 초기 3년간 +25%p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일반) 5년간 50%
  (청년 등) 5년간 100%

〈신 설〉

-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 **50%**

구 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중소기업	-	5년 50% (신성장서비스 우대)	상시 근로자 증가율 × 50%
청년·생계형	5년 50%	5년 100%	
벤처기업 등	5년 50%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신 설〉

○ **(적용기한)** '24.12.31.

개 정

□ 감면율 정비 등 제도 합리화

○ (좌 동)

○ **❶업종 우대감면 적용기한 종료**
❷수도권 감면율 축소
❸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 **적용기한 종료**

- **수도권 밖***:
  (좌 동)

*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
  (일반) 5년간 50%→25%
  (청년 등) 5년간 100%→75%
-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 **100%**

구 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창업 중소기업	-	**5년 25%**	5년 50%	상시 근로자 증가율 × **100%**
청년·생계형	5년 50%	**5년 75%**	5년 100%	
벤처기업 등	5년 50%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 **(감면한도) 연간 5억원**

○ **'27.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창업 및 균형발전 지원,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6.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03 업종명칭 현행화
(조특법 §6③, §7①, §106⑤)

종 전	개 정
□ 조특법상 업종명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 ○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 업종명 현행화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 ○ **도로화물운송업*** *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예: 대형화물차운송 등은 제외)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 반영

0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조특법 §10①)

종 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대상**)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용

○ (**공제율**)

구 분(%)	기본			추가[1]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15[2]	25	-
신성장·원천 기술	20	20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40	최대 10

1)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3)
2) (~3년)15%, (4~5년)10%, (6년~)8%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기본 25%, 추가 최대 15%

개 정

□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 (좌 동)

○ 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 점감구조 도입**

구 분(%)	기본			추가[1]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20**[2]	25	-
신성장·원천 기술	20	**20, 25**[3]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4]	40	최대 10

1) (좌 동)
2) (~3년)20%, (4~5년)15%, (6년~)8%
3) (~3년)25%, (4년~)20%
4) (~3년)35%, (4년~)30%

〈삭 제〉

〈개정이유〉 기업의 성장 촉진 및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점감구조 도입)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 (코스닥상장 우대 공제율 폐지에 관한 경과규정) '24.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이 지출한 비용은 종전 규정 적용

05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
(조특법 §10의2①)

종 전	개 정
□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 대상 출연금 확대
○ (**내용**) 출연금 수령 시 익금불산입 후 지출 시 익금산입 ○ (**대상**) - 기초연구법 등*에 따른 출연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좌 동)
〈추 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
○ (**적용기한**) '26.12.31.	○ (좌 동)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

0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조특법 §12의4①, 조특령 §11의4④)

종 전	개 정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세액공제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 **(적용대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50% 이상(경영권 지배시 30%) 인수한 내국법인	○ (좌 동)
○ **(세액공제)** 피인수법인 기술가치금액의 10% - **(기술가치금액) 직접법, 간접법 중 선택 가능** • **(직접법)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특허권 등에 대한 평가액 합계** • **(간접법)** 양도가액 - (피인수법인 순자산시가 × 120%)	○ **기술가치금액의 10% → 5%** - **직접법으로 계산** • (좌 동) 〈삭 제〉
○ **(취득기간)**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최대 2년간 분할취득 가능)**	○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최대 3년간 분할취득 가능)**
○ **(적용기한)** '24.12.31.	○ '27.12.31.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취득기간)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공 제 율) '25.1.1. 이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0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6의2①, §16의3①, §16의4①)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❶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16의2) - **(대상)** 비상장·코넥스 상장 - **(특례내용)**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 - 매수가액) **연간 2억원 한도* 비과세** * 벤처기업별 총 누적한도 5억원 ❷ **행사이익 소득세 분할납부 특례**(§16의3) - **(대상)** 비상장·상장 벤처기업 - **(특례내용)** 행사이익(§16의2에 따른 비과세 이익 제외)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❸ **적격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16의4) * 3년간 행사가액 합계 5억원 이하, 행사후 1년간 보유 등 -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 **(특례내용) 행사시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 (양도가액 - 행사가액)으로 납부 가능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적용기한) '24.12.31.	□ '27.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

08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19)

종 전	개 정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경영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 서면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 적용기한 연장 등
❶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 **(공제율) 15% 공제** - **(적용기한)** '24.12.31.	○ **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연장** - 15% → 10% - '27.12.31.
❷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최대주주 등 제외 - **(감면대상소득)**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 **(감면율)** 소득세 50% 상당 세액감면 - **(적용기한)** '24.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7.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성과공유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09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증가분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4①)

종 전

□ 통합투자세액공제

○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

○ (**공제율**)

구 분(%)	기본			추가[1]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원천 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15		25	4

1)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적용기한

○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에 **'24. 12. 31. 까지 투자**하는 경우

개 정

□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 (좌 동)

○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점감구조 도입**

구 분(%)	기본			추가[1]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7.5[2]	10	10
신성장·원천 기술	3	6, 9[3]	12	
국가전략기술	15	15, 20[4]	25	

1) (좌 동)
2) (~3년)7.5%, (4년~)5%
3) (~3년)9%, (4년~)6%
4) (~3년)20%, (4년~)15%

□ 적용기한 연장

○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에 **'27. 12. 31. 까지 투자**하는 경우

〈개정이유〉 기업의 성장 및 투자 촉진,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점감구조 도입)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추가공제율)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0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
(조특법 §24①, §146)

종 전	개 정
□ 통합투자세액공제 ○ (**적용대상**) 사업*하는 내국인 *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 ○ (**공제대상**) 취득한 자산* * 중고품, 운용리스자산 제외 ❶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 건물·구축물, 차량 등 제외) ❷ ❶의 제외자산 중 1) 운수업 차량 등 업종별 특정 자산 2) 연구시험, 에너지절약 등 특정 목적 자산 ○ (**사후관리**) 투자완료 후 2년내 자산 처분 또는 임대 시 **추징**	□ 사후관리 규정 보완 (좌 동)
〈신 설〉	-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임대 포함**

〈개정이유〉 투자지원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처분·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11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조특법 §29의6①)

종 전	개 정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 범위 위임근거 마련, 감면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감면대상)**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성과보상기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감면요건)** 성과보상기금에 **5년 이상** 가입한 중소·중견 기업 근로자	○ **5년 이상 → 3년 이상**
○ **(감면율)** - (청년)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 - (그 외)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좌 동)
○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한 경우	○ **'27.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개정이유〉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2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46의7①)

종 전	개 정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시 과세특례 ○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등*** 주주 * 벤처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기술우수중소기업 ○ **(과세특례)**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적용기한)** '24.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7.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 성장 지원

13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47, 조특령 §43의9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 **(적용요건)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보통주식 현물출자로 납입** * (요건) 벤처기업의 발기인 & 상무 등기이사 & 30% 이상 의결권 보유 최대주주 등 ○ **(과세특례)** 보통주식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시*** 과세이연금액 과세 *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벤처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등 ○ **(신청) 현물출자한 날**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신청*** *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벤처기업 성장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조특법 §58①)

종 전	개 정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 ○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기부금 ×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11만원 + 10만원 초과분* × 15% * 사업자는 이월결손금 공제 후 필요경비 산입 ○ (기부·공제한도) 500만원	□ 공제적용 기부금 한도 상향 (좌 동) ○ **500만원 → 2,000만원**

〈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5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
(조특법 §63, 조특령 §60)

종 전	개 정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 이전지역 범위 합리화
○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	○ (좌 동)
○ (**감면율**)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 -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5년 100% + 2년 50% *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 (좌 동)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5년 100% + 2년 50% *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 지방광역시, 수도권 연접지역, 대도시(인구30만 이상): 5년 100% + 2년 50% -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 7년 100% + 3년 50% *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 그 외 낙후지역: 10년 100% + 2년 50%	(좌 동)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까지 기존 공장을 철거·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16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의 감면요건 정비

(조특법 §63, §63의2, 조특령 §60, §60의2)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 (대상)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공장이전 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단서 신설〉

○ (업종) 이전 전·후 동일한 업종* 영위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 기준

○ (감면율)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
<table>
<tr><th>이전지역</th><th>감면율</th></tr>
<tr><td>낙후지역</td><td>10년 100%
+ 2년 50%</td></tr>
<tr><td>광역시, 인구30만 이상 도시 內 낙후지역</td><td>7년 100%
+ 3년 50%</td></tr>
<tr><td>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광역시, 인구30만 이상 도시 등</td><td>5년 100%
+ 2년 50%</td></tr>
</table>
*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td><td>□ 대상 및 업종 요건 합리화

○ (좌 동)

- 다만, 이전 전 10년 내에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
○ 이전 전 2년(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좌 동)</td></tr>
</table>

〈개정이유〉 지방이전 지원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까지 기존 공장·본사를 철거·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17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신설 (조특법 §71의2, 조특령 §68의2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기존 1주택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포함 ○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❶ (**소재지**) **인구감소지역**(다만,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 ❷ (**가액상한**) **공시가격 4억원*** * (양도소득세) 취득시 공시가격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기준 ❸ (**취득기한**) **'24.1.4.부터 '26.12.31.** ○ (**특례내용**)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8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조특법 §74①)

종 전	개 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 (적용대상) - 사립학교 - 사회복지법인 - 국립대학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등	□ 적용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개정이유〉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9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

(조특법 §77의2②, 조특령 §73②)

종 전	개 정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 40%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❶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2년 이상 보유 ❷ 토지 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❸ 양도대금을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 ○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특례 적용**	□ 과세특례 적용요건 합리화 (좌 동) ○ 공익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 명세를 **보상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 제출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0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 §86의3①)

종 전	개 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 **(공제부금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 (좌 동)
○ **(공제적용 소득)** ❶ 또는 ❷ ❶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❷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근로소득**	○ **법인대표자 적용기준 완화** ❶ (좌 동) ❷ 총급여 **7천만원→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 **(소득공제 한도)**	○ **소득공제 한도 상향**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1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87)

종 전	개 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대상 확대
○ **(대상)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소득공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납입한도 **연 300만원**) ○ **(적용기한)** '25.12.31.	(좌 동)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연령: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적용대상 확대
○ **(대상)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비과세한도)** 500만원 ○ **(적용기한)** '25.12.31.	(좌 동)

〈개정이유〉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소득공제)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비 과 세) '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22 세금우대저축자료 제공요구 주체 확대
(조특법 §89의2⑥)

종 전	개 정
□ 세금우대저축자료의 보관기간 및 제공·누설 제한 ○ **(집중기관*의 자료 보관기간) 개별 세금우대저축 해지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 * 은행연합회가 비과세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등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아 보관 ** 연금계좌 자료는 가입자의 모든 연금계좌가 해지된 연도 ○ **(집중기관의 자료제공 제한) 저축자**의 **서면요구** 또는 **동의** 없이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공·누설 금지** ○ **(자료제공 제한 예외)** - **국세청장의 요구** - 「**금융실명법**」 **상 조사·감독** 등의 경우 〈추 가〉	□ 자료요구 주체 추가 (좌 동) -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연금계좌 자료**를 「**통계법**」 **제25조**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개정이유〉 국가 승인통계 작성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2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1의20①)

종 전	개 정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분**	○ **'25.12.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24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조특법 §91의22③)

종 전	개 정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 **(가입요건)** ❶ 만 19~34세, ❷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과세특례)**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 **(납입한도)** 연 840만원 ○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 추징요건 완화 (좌 동)
○ **(추징)**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 비과세 적용받은 상당세액 **추징** -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 미추징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혼인·출산 등	○ **5년 → 3년** - (좌 동)

〈개정이유〉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25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1의23①)

종 전	개 정
□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 (**특례내용**)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 후 만기까지 보유시 발생하는 이자소득 분리과세 - (**적용세율**) 14% ○ (**한도**) 1인당 매입금액 총 2억원 ○ (**적용기한**) '24.12.31.까지 매입분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7.12.31.까지 매입분

〈개정이유〉 국채 수요기반 다변화 및 국민 자산형성 지원

26 결혼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92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결혼세액공제 ○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50만원** ○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7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6의3①)

종 전	개 정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좌 동)
○ **(적용기한)** '24.12.31.	○ '25.12.3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2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7의3①)

종 전	개 정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적용기한 연장
○ **(적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❶ **(전용면적)** 85㎡ 이하 ❷ **(임대기간)** 10년 이상 ❸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❹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지원내용)**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좌 동)
○ **(적용기한)** '24.12.31.	○ '27.12.31.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지원

29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7의9①, 법인령 §92의2④)

종 전	개 정
□ 공공매입임대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요건)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 위한 토지 양도** * 공공주택사업자(LH 등)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자 ○ **(지원내용)** ❶ **(법인)**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비사업용 토지: 10%) **적용 제외** ❷ **(거주자)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0%)**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적용기한)** '24.12.31.	○ **'27.12.31.**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지원

30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8의9, 조특령 §98의8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❶ **'24.1.10. ~ '25.12.31 기간 중 취득** ❷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❸ 전용면적 85m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특례내용**)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개정이유〉 원활한 주택 공급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1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의10)

종 전	개 정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❶ '23.12.31. 이전 폐업 및 '26.12.31. 까지 재기*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계속 중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 ❷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❸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월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 **폐업 및 재기 기준일 연장** ❶ '24.12.31. 이전 폐업 및 '27.12.31. 까지 재기 (좌 동)
○ (**신청기한**) '27.12.31.	○ '28.12.31.

〈개정이유〉 영세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32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9의14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적용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 (**적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❶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❷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 ❸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 (**과세특례**)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계좌납입액**(1억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사후관리**)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시 **세액공제액 추징** ○ (**적용기한**) '27.12.31.

〈개정이유〉 부동산 연금화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3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조특법 §100의3①(2), §100의5①(3))

종 전

□ 근로장려금 지급기준(기준금액 미만 지급)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총급여액에 따른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산정식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2천100분**의 330

개 정

□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향에 따른 장려금 산정식 수정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2천700분**의 330

〈개정이유〉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 지원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4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
(조특법 §100의3⑤(2))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홑벌이 가구*의 부양 직계존속 거주요건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인 본인만 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 소득자인 가구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 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추 가〉	□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거주요건 완화** (좌 동) - **장애인**이 질병 치료·요양 목적 일시퇴거시 **거주요건 적용 배제**(부양가족 인정)

〈개정이유〉 장애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5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유보 요건 정비
(조특법 §100의5②, §100의8⑤)

종 전	개 정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상반기분)** 총지급금의 35% ○ **(하반기분)** 총지급금의 35%	□ **하반기 지급금액 명확화** ○ (좌 동) ○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금액**(35%)**을 차감**한 금액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유보 요건 ○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 장려금 지급유보 요건 조정 ○ (좌 동) ○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개정이유〉 납세협력비용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6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104의10①·⑧, 조특령 §104의7④)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도
○ (특례내용)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을 선박톤수, 운항일이익,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
* 과세표준(선박표준이익) = Σ(개별선박의 순톤수×톤당 1운항일 이익×운항일수×사용률)
- (운항일 이익) 모든 선박에 동일한 운항일 이익 적용
<table>
<tr><th>개별선박순톤수</th><th>톤당 1운항일 이익</th></tr>
<tr><td>1,000톤 이하분</td><td>14원</td></tr>
<tr><td>1,000~10,000톤</td><td>11원</td></tr>
<tr><td>10,000~25,000톤</td><td>7원</td></tr>
<tr><td>25,000톤 초과분</td><td>4원</td></tr>
</table>
○ (적용기한) '24.12.31.</td><td>□ 운항일 이익 조정 등 제도 재설계
○ (좌 동)
-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 30% 인상
<table>
<tr><th rowspan="2">개별선박순톤수</th><th colspan="2">톤당 1운항일 이익</th></tr>
<tr><th>기준선박</th><th>기준선박 外</th></tr>
<tr><td>1,000톤 이하분</td><td>14원</td><td>18.2원</td></tr>
<tr><td>1,000~10,000톤</td><td>11원</td><td>14.3원</td></tr>
<tr><td>10,000~25,000톤</td><td>7원</td><td>9.1원</td></tr>
<tr><td>25,000톤 초과분</td><td>4원</td><td>5.2원</td></tr>
</table>
※ 기준선박: 해당 기업 소유 선박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 리스 선박
○ '29.12.31.</td></tr>
</table>

〈개정이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7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11)

종 전	개 정
□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손금산입 특례 ○ (**적용대상**)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 (**특례내용**) 신용회복목적 회사에 출연 시 해당 출연 금액 손금산입 허용 ○ (**적용기한**) '24.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7.12.31.

〈개정이유〉 서민 정책금융 활성화 지원

38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24①, §118의2①)

종 전	개 정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제외 ○ (**대상**) ❶, ❷에 모두 해당하는 해외진출기업 ❶ **국외에서 2년 이상 경영하던 사업장**을 **폐쇄**(완전복귀) 또는 **축소·유지**(부분복귀) ❷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증설** ○ (**감면율**) - (**소득·법인세**) **7년간 100% + 3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 2년간 50% - (**관세**) **5년간*** **완전복귀 100%, 부분복귀 50%**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7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 ○ (**적용기한**) '24.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7.12.3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39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적용 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26)

종 전	개 정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 (요건) ❶, ❷ 모두 충족 ❶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된 경우 * (취소사유) 정비구역 해제 등 ❷ 시공자등이 해당 조합 등에 대한 채권 포기 ○ (특례내용) 시공자등이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 ※ 채권포기로 조합 등이 얻는 이익은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 (적용기한) '24.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7.12.31.

〈개정이유〉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40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

(조특법 §104의34 신설, 조특령 §104의31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대상) 건설기계*** **1대**를 **양도**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대체취득**한 **사업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 - 과세특례 적용 시 **5년 이내 중복 적용 불가** ○ **(과세특례) 양도차익**에서 **대체취득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0만원 초과분**(= ❶×❷ - 1,000만원)을 **3년 분할 산입** (※ ❶×❷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특례 적용 불가) ❶ **기존자산 양도가액 - 기존자산 장부가액** ❷ **신규자산 취득가액 / 기존자산 양도가액** (※ 100분의 100 한도) ○ **(사후관리)** 총수입금액 전액 산입 전 **폐업 등의 경우 미산입금액 전액 총수입금액 산입 후 해당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 추가 납부**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의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1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

(조특법 §106의7⑦, 조특령 §106의12)

종 전	개 정
□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 시 가산세 등 추징 * 일반택시사업자는 경감세액(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100) 중 일부(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100)를 운수종사자에게 지급 ○ (추징금액) ❶~❸의 합계액 ❶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❷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미지급기간(일) × 0.022% ❸ 가산세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40% 〈단서 신설〉	□ 가산세 추징 배제규정 신설 (좌 동) - 다만,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으로 경감세액 미지급 시 **가산세 추징 배제**

〈개정이유〉 가산세 추징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42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조특법 §106의11 신설, 108의3, 조특령 §106의15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면세점 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 **(대상용역) 면세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대상자) 면세점** 및 **여행사** ○ **(납부절차)** ❶ 면세점 및 여행사는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 ❷ **매입자**는 송객용역 매입 시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입금** ❸ 지정 금융회사는 공급가액을 **매출자의 전용거래계좌로 입금**하고, 매입자의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을 **실시간 환급** ❹ **지정 금융회사**는 신고기간 도래 시 실시간 환급 후 잔액을 **국세청에 납부** ○ **(가산세)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및 **지연입금가산세**** * 매입자 및 매출자에게 송객용역 가액의 10%를 부과 ** 송객용역 관련 부가가치세액 × 지연입금일수 × 22/100,000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5.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3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조특법 §107의2, 조특령 §109의2)

종 전	개 정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 환급 대상 숙박업 범위 확대
○ **(개요) 외국인관광객 등**이 공급받은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특례적용호텔에서 30박 이하 숙박시 환급창구(출국장, 도심)에서 환급	○ (좌 동)
○ **(대상) 호텔업**	○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개정이유〉 외국인관광 활성화

〈적용시기〉 '25.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4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109)

종 전	개 정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 하이브리드차 감면한도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 (좌 동)
○ **(감면한도)** - 하이브리드차: 대당 **100만원** - 전기차: 대당 **300만원** - 수소전기차: 대당 **400만원**	○ (좌 동) - **100만원 → 70만원** (좌 동)
○ **(적용기한)** '24.12.31.	○ '26.12.31.

〈개정이유〉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5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조특법 §122의3⑤)

종 전	개 정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기준**	□ 추징기준 합리화
○ **(대상)** ❶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및 ❷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의료비·교육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50% 초과 등 (월세)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등	(좌 동)
○ **(추징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시 **공제세액 전액 추징**	○ **추징기준 변경**(수입·경비 → 소득)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1)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 신고** 2)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 계상**	성실사업자: **사업소득금액 20% 이상 과소 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소 신고***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기준(소득금액)과 일원화

〈개정이유〉 세액공제 사후관리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46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조특법 §126의2②)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기본공제)
- (공제율) 결제수단별 차등
<table>
<tr><th>구 분</th><th>공제율</th></tr>
<tr><td>❶ 신용카드</td><td>15%</td></tr>
<tr><td>❷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td>30%</td></tr>
</table>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250만원
○ (추가공제)
- (공제율)
<table>
<tr><th>항 목</th><th>공제율</th></tr>
<tr><td>❶ 전통시장·대중교통</td><td>40%</td></tr>
<tr><td>❷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추 가〉</td><td>30%</td></tr>
</table>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200만원
○ (적용기한) ’25.12.31</td><td>□ 추가공제 적용대상 확대
(좌 동)
○ 추가공제 항목 추가
- (공제율)
<table>
<tr><th>항 목</th><th>공제율</th></tr>
<tr><td>❶ 전통시장·대중교통</td><td>40%</td></tr>
<tr><td>❷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td><td>30%</td></tr>
</table>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좌 동)
○ (좌 동)</td></tr>
</table>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

47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종료
(조특법 §12의3)

종 전	개 정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세액공제 ○ (**적용대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한 내국법인 * 벤처기업, 신기술인증 중소기업 등 ○ (**세액공제**) 피합병기업 기술가치금액의 10% ○ (**적용기한**) '24.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조세특례 정비

48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종료
(조특법 §28의4)

종 전	개 정
□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대상자산**) 에너지절약시설 ○ (**특례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 75%) 이내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가속상각 허용) ○ (**적용기한**) '24.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중복지원 정비

49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종료
(조특법 §91의15)

종 전	개 정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분리과세 특례 ○ (**펀드요건**) 비우량채권 등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 신용등급 BBB+ 이하 사채 45% 이상 투자 등 ○ (**세제지원**)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14% 세율로 분리과세 - (**지원한도**) 인별 투자금액 3천만원 - (**최소 투자기간**) 1년 ○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분**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50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종료
(조특법 §106②·§116①)

종 전	개 정
□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지자체 수입 부가가치세·인지세 면제 ○ (**대상**) 경기시설 제작 등을 위한 물품으로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 조직위에서 작성하는 서류 ○ (**적용기한**) '24.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감면 등 특례제도 적용기한 정리]

적용기한	내 용(조문)
종료	□ 창업중소기업(신성장서비스업) 감면율 우대 종료(§6)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종료(§12의3) □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종료(§28의4) □ 정규직 전환 추가공제 종료(§29의8)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종료(§91의15) □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종료(§106, §116)
연장 (2025.12.31.)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91의20)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96의3)
연장 (2026.12.31.)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109)
연장 (2027.12.31.)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6)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2의4)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6의2, §16의3, §16의4)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19)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4)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29의6)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46의7) □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91의23)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97의3) □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97의9) □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99의14) □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100의33) □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104의11) □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104의24, §118의2)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104의26)
연장 (2028.12.31.)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기한 연장(§99의10) □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100의34)
연장 (2029.12.31.)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104의10)

0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0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
(국조법 §6)

종 전	개 정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 경정청구 절차 합리화
○ **(경정청구 기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 (좌 동)
○ **(청구시 제출자료)**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추 가〉**	○ **제출자료 추가** - (좌 동) - **정상가격 입증서류***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
○ **(경정 기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신 설〉**	○ 경정 기한 연장: **2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경정 관련 **자료 보완**) 제출자료 미비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요구 가능** - 자료 보완 기간은 **경정 기한 산정에서 제외**

〈개정이유〉 국제거래에 대한 적정과세 기반 마련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02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
(국조법 §36·§37·§38)

종 전	개 정
□ **금융정보 자동정보교환체계** * 금융거래회사등은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고, 가입국 국세청 간 해당 정보를 매년 상호교환	□ **자동정보교환체계 대상 확대**
○ (**교환 정보**) 금융정보등 〈추 가〉	○ (좌 동) - **암호화자산* 정보** * 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되어 안전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정보수집 주체**) 금융거래회사등 * 정보 제공의무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추 가〉	○ (좌 동) - **암호화자산사업자**
○ (**실사대상**) 금융거래 상대방 〈추 가〉	○ (**실사대상**) **금융거래등 상대방** - **암호화자산거래 상대방**

〈개정이유〉 OECD 암호화자산 정보교환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교환 정보 요청·제출) '27.1.1.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실사) '26.1.1. 이후 금융거래회사등이 실사하는 분부터 적용

※ (실사에 관한 경과규정) '26.1.1. 현재 금융거래등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용

0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
(국조법 §54)

종 전	개 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 신고의무 면제대상 조정
○ **(원칙)**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좌 동)
○ **(면제대상)** - 단기체류 외국인 거주자 -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추 가〉**	○ (좌 동) - (좌 동) - **183일 이하 → 182일 이하** - (좌 동) - **불복·소송·상호합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 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내국법인**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04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완 요구 기한 조정
(국조법 §58)

종 전	개 정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자료의 제출·보완 요구에 대한 기한 삭제
○ **(적용대상)**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취득·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제출자료)** 해외직접투자명세등 또는 해외부동산등명세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좌 동)
○ **(제출·보완 요구)** 자료를 미제출·거짓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자료의 제출·보완 요구 가능	○ **요구기간 제한 삭제**
○ **(과태료)** 자료 미제출·거짓제출, 보완요구 불응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 * (해외직접투자명세등) 5천만원 이하 (해외부동산등명세) 취득가액등의 10% 이하	○ (좌 동)

〈개정이유〉 역외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보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 이전에 제출·보완 요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적용

05 그룹 및 구성기업 정의 명확화
(국조법 §61①(2)·(9))

종 전	개 정
□ 그룹의 정의	□ 정의 명확화
❶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해 서로 **연결된** 기업들의 집단	❶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해 서로 **연관된** 기업*들의 집단 * 연결기업 및 **일부 연결제외기업** (매각예

종 전	개 정
	정기업 등) 포함
❷ 소재지국 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❷ (좌 동)
□ 구성기업의 정의	□ 정의 명확화
❶ 최종모기업과 **최종모기업에 연결**된 기업	❶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 * 연결기업 및 **일부 연결제외기업** (매각예정기업 등) 포함
❷ 이를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	❷ (좌 동)

〈개정이유〉 정의 명확화

06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
(국조법 §61①(3))

종 전	개 정
□ 고정사업장의 정의	□ 정의 명확화
❶ 유효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❶ (좌 동)
❷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 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와 유사하게 **과세**하는 사업장	❷ (좌 동) - 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와 유사하게 **순소득 기준으로 과세**하는 사업장
❸ **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경우** -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르면 소재지국 과세권이 **인정되는** 사업장	❸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 -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르면 소재지국 과세권이 **인정될** 사업장
❹ ❶~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소재지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사업장**	❹ (좌 동) - **본점 소재지국**에서 **역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

〈개정이유〉 정의 명확화

07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명칭 및 정의 명확화
(국조법 §61①(8))

종 전	개 정
□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정의 ○ 외부주주의 **지분**이 20%를 초과하는 **중간모기업**	□ 부분소유모기업으로 명칭 변경 및 정의 명확화 ○ 외부주주의 **직·간접 지분**이 20%를 초과하는 **구성기업**

〈개정이유〉 명칭 및 정의 명확화

08 연결매출액 산출방법 위임근거 마련
(국조법 §62⑤)

종 전	개 정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유로 이상 〈신 설〉	□ 연결매출액 산출방법 위임근거 마련 ○ (좌 동) - 연결매출액의 **구체적 산출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9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미납 이연법인세부채 차감금액 계산방법 위임근거 마련 (국조법 §67③)

종 전	개 정
□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미납 이연법인세부채 차감금액 계산방법 위임근거 마련
○ 이연법인세부채 계상 후 5년 이내 관련 법인세 미납 시 계상한 사업연도 대상조세에서 **해당금액 차감**	○ (좌 동)
〈신 설〉	- 차감금액의 **구체적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조정대상조세 계산 관련 결손취급 특례 신설
(국조법 §67④·⑤ 신설)

종 전	개 정
□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법인세비용에 **총이연법인세 조정금액*** 등 반영 * 이연법인세부채(회계상 법인세비용 > 세법상 법인세) → 가산 이연법인세자산(세법상 법인세 > 회계상 법인세비용) → 차감 〈신 설〉	□ 결손취급 특례 신설 ○ (좌 동) ○ **(특례)** 신고구성기업은 **최초적용연도**에 **결손취급 특례*** 선택 허용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 × 15%)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간주 ※ 구체적 적용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 단, **적격분배과세제도*** 특례**(법 §78)**가 적용되는 구성기업은 **제외** * 법인의 소득발생 시가 아닌 이익분배 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법 보완
(국조법 §73⑤)

종 전	개 정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추가 세액 배분방법 * 추가세액의 총액은 ❶ 국가별 배분 후 해당 국에 소재한 ❷ 기업별로 배분	□ 기업별 배분방법 보완
○ **(국가별 배분)** 종업원 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50:50 가중평균)을 고려하여 배분	○ (좌 동)
○ **(기업별 배분)** ①·② 중 선택 ❶ **(법정배분)** 모기업의 직·간접 보유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분 ❷ **(지정배분)** 구성기업간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구성기업에 배분 **〈단서 신설〉**	○ **지정배분(❷) 적용 후 미납시 배분방법 신설** (좌 동) - 다만, 직전사업연도까지 **지정배분(❷) 된 추가세액 미납 시** 아래에 따라 배분 • **최종모기업**이 **국내 소재**: **최종모기업**에 배분 • 최종모기업이 **국내 미소재**: **법정배분(❶)** 적용

〈개정이유〉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최소적용제외 특례의 예외 신설
(국조법 §74②)

종 전	개 정
□ 최소적용제외 특례	□ 특례의 예외 신설
○ (**요건**) 국가 내 구성기업의 최근 3개 사업연도 ❶매출액 평균 및 ❷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금액 평균이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❶ (매출액 평균) 1천만 유로 ❷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금액 평균) 1백만 유로 ○ (**특례**) 해당 국가 내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 (좌 동)
〈신 설〉	- (**예외**) 글로벌최저한세신고 후 신고후 조정 등 사유로 **사후적으로 특례요건 충족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 **특례 적용 배제** * ❶ 신고 당시 특례요건 충족 국가→미충족하게 되거나 ❷ 신고 당시 특례요건 미충족 국가→충족하게 되는 경우 모두 포함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대상기업 확대 등
(국조법 §77의2)

종 전	개 정
□ ❶ 배당공제제도* 또는 ❷ 투과기업**에 대한 특례 * 배당금액을 지급기업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주주에게만 과세 ** 기업 손익이 해당 기업이 아닌 지분소유자에게 직접 귀속	□ 대상기업 확대 및 대상조세 차감방법 보완
○ **(대상기업) 최종모기업** * ❶배당공제제도가 적용되거나 ❷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 (좌 동)
〈추 가〉	- ❶배당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구성기업*** 또는 ❷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고정사업장** 또는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구성기업**의 고정사업장** * 최종모기업과 동일국가에 소재하고 배당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구성기업 ** 투시과세기업인 구성기업
○ **(특례) ❶배당액** 또는 **❷지분 보유자 귀속분**을 해당 기업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	○ (좌 동)
〈신 설〉	-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 비율***만큼 대상조세도 차감** * ❶ 배당공제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차감 금액 ÷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순조세비용) ❷ 투과기업인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차감금액 ÷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투시과세기업 지분소유자 기준 위임근거 마련
(국조법 §79①)

종 전	개 정
□ 투시과세기업의 정의 ○ **투과기업의 지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그 지분소유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기업 〈신 설〉	□ 지분소유자 기준 위임근거 마련 ○ (좌 동) - 지분소유자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중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의 범위 명확화 (국조법 §79⑥)

종 전	개 정
□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중 과세분배방식 적용방법 ○ (**요건**)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에 **분배**하는 이익등에 대하여 최저한세율(15%) 이상 과세* 예상 * 투자구성기입 및 주주구성기업에 대한 세액 합산 ○ (**적용방법**)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한 금액은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 포함 -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는 차감하되 4년 이내 **분배**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세액 과세	□ 분배의 범위 명확화 ○ 분배에는 **간주분배 포함**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전환기 적용면제의 공동기업 등에 대한 적용방법 보완

(국조법 §80② 신설)

종 전	개 정
□ 전환기 적용면제	□ 공동기업 등에 대한 적용방법 보완
○ (**요건**) 적격 국가별보고서 기준으로 면제 요건* 충족 * ❶ 소액 ❷ 간이 실효세율 또는 ❸ 초과이익 요건	○ (좌 동)
○ (**효과**) 전환기*에 한해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 '26.12.31. 이전 개시하고 '28.6.30.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	○ (좌 동)
〈신 설〉	-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은 구성기업과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 *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7 일반적 적용면제 등 추가신설
(국조법 §80③·④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일반적 적용면제 ○ **(요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면제요건*** 충족 * ❶ 소액 ❷ 실효세율 15% 이상 또는 ❸ 초과이익 요건 ※ 구체적 요건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 **(효과)**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신 설〉	□ 소득산입보완규칙 전환기 적용면제 ○ **(요건) 최종모기업 소재국**의 **명목세율이 20% 이상** ○ **(효과) 전환기***에 한해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 '25.12.31. 이전 개시하고 '26.12.30.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신고기한 특례 신설
(국조법 §83①·④, §84①)

종 전	개 정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 신고 * 최초적용연도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 〈신 설〉	□ 신고기한 특례 신설 ○ **(원칙)** 좌 동 ○ **(특례) '26.6.30 전 신고기한 도래** 시 **'26.6.30까지 신고**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7 기타 법률

01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개소법 §20의2, 개소령 §34의2)

종 전	개 정
□ LPG부탄 개별소비세 환급 ○ **환급대상** - 가정용 부탄 〈추 가〉 ○ **환급세액** - 부탄 세액과 프로판 세액의 차액* * 275(부탄) - 14(프로판) = 261원/kg	□ 환급특례 신설 ○ **환급대상 확대** - (좌 동) - **수소제조용 부탄**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5.4.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2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주세법 §8③, 주세령 §7)

종 전	개 정
□ 전통주에 대한 주세액 경감 ○ **(대상)** 전년도 출고량기준을 충족하는 전통주 제조자 - **(출고량)** 발효주 500㎘ 이하, 증류주 250㎘이하 ○ **(경감율 및 적용한도)** - (발효주) 200㎘ 이하: 50% 〈신 설〉 - (증류주) 100㎘ 이하: 50% 〈신 설〉	□ 경감대상 및 한도 확대 ○ (좌 동) - **발효주 700㎘ 이하, 증류주 350㎘ 이하** ○ (좌 동) - **(발효주)** 200㎘ 이하: 50% **200㎘ 초과~400㎘ 이하: 30%** - **(증류주)** 100㎘ 이하: 50% **100㎘ 초과~200㎘ 이하: 30%**

〈개정이유〉 전통주 산업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03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교통세법 §11①·②)

현 행	개 정 안
□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대상	□ 부과대상 확대
○ (**원칙**) 제조자등 - 휘발유·경유 등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등 ○ (**특례**) 판매자등 -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 - 등유, 부생연료유, 용제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자	(좌 동)
〈추 가〉	-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 *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없이 매입한 유류
○ (**이중과세 방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과세한 경우 이중과세 하지 않음 - 제조자등 - 판매자등	(좌 동)
〈추 가〉	- **면세유 반입자·양수자*** * 면세유 용도변경 등에 따른 추징대상

〈개정이유〉 유류 부정유통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분부터 적용

0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
(교통세법 부칙)

종 전	개 정
□ 교통·에너지·환경세 ○ (유효기간) ~ '24.12.31. ※ 법률 제9346호(폐지법률) '25.1.1. 시행 예정	□ 유효기간 연장 ○ ~ '27.12.31. ※ 법률 제9346호(폐지법률) 시행시기 연기('28.1.1. 시행)

〈개정이유〉 특별회계 사업 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05 금융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대
(과제법 §6④)

종 전	개 정
□ 금융거래 과세자료 제출대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추 가〉	□ 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대 ○ (좌 동) ○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조사자료**

〈개정이유〉 금융거래 관련 조사자료를 활용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자료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유의사항〉

〈2024 핵심 개정세법〉은 2024.12.1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각 세목별 핵심 개정사항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국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사항을 포괄하고 있으나, 실무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추후 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규정과 개정세법의 구체적인 조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2023년 핵심 개정세법] 만든 사람들

감수

한국세무사회 회장 구재이, 부회장 김선명, 연구이사 김연정, 국제이사 백낙범
(국민의 세무사TF) 이동기, 고경희, 김두천, 김선일, 김희철, 방범권, 손상익, 손창용, 윤수정, 이강오, 이종훈, 이한우, 이현진, 장동하, 장보원, 정아영, 지병근

편집

한국세무사회 연구기획실 함택동, 황영현, 김영준, 정윤아, 박시훈, 정은주, 박진용

※ 알려드립니다. 책자의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한국세무사회 연구기획실 (전화 02-521-9544, 이메일 tax9544@kacpta.kr)으로 연락 바랍니다.

2024 핵심 개정세법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구 재 이
발행처: 한국세무사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서초동)
등 록: 1991.11.20. 제21-286호
TEL 02-521-9544 FAX 0508-118-1854

저 자 와
협의하에
인지생략

〈이 책의 내용을 한국세무사회의 허락없이 무단복제 출판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서는 항상 그 완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적용할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저자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